

##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

### I 권고 배경과 이유

-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,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통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‘객관의무’가 있다.
-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 한편, 그 기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사건처리에 있어 공정성·형평성·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.
- 그간 검찰사건처리기준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고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, 이에 검찰의 사건 처리가 “폐쇄적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.
- 뿐만 아니라 검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.
- 이에 검찰미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‘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’를 권고한다.

## II

## 권고 사항

### 1 '검찰사건처리기준'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.

#### 가. 공개의 의의

-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, 국민들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.
- 이를 통해 형사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소위 법조 브로커들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, 그동안 검찰은 물론 사법 전체에 대해 조장된 불신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

#### 나. 공개범위

- [구형 기준]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“구형 기준”을 공개한다.
- [구속 기준] 구속사유인 ‘주거불명,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’는 수치화나 계량화가 어렵고, 구속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검찰의 “구속 기준” 공개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, 구속수사 여부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“구속 기준”을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공개한다.
  - 형사소송법 등 규정상에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“구속사유”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(도표화 등)하여 공개한다.

- 검찰의 “구속기준”은 관련 지침[‘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’(대검예규 기획 제584호, 2011. 12. 26. 개정)]을 불구속 수사 원칙, 그간 변화된 현실 상황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, 중장기적인 연구, 검찰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검토 등을 거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한다.
- [구공판 기준]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, 즉 “구공판 기준”은 자유형/재산형 체계가 비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연구를 거쳐 추후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다.

#### 다. 공개방법

-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죄군(예: 음주운전, 교통사고 범죄 등)을 우선 공개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개하되,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여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.

### ② 공개를 위하여 ‘검찰사건처리기준’을 재정립한다.

#### 가.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한다.

- 검찰 내 사건처리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유형의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등 사건 처리 기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.

- 국민의 법감정과 각 분야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검찰의 처분 및 구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나.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협의체를 두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.

- 대검찰청 산하에 일선 검사 및 변호사·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한다.
-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및 수사기관의 법정책적 목적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이 되도록 한다.